

#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71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19.

발의자 : 안상수 · 이만희 · 황주홍  
이개호 · 김영춘 · 김종회  
김성찬 · 이완영 · 이양수  
홍문표 · 권석창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 ·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제정 ·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· 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41조 · 제42조 및 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  
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 절  
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 
한다.

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 
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 
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산림청  
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 
라 징수한다.

<삭 제>